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14 발의연월일: 2022. 7. 6.

발 의 자:태영호·구자근·김도읍

김석기 · 김선교 · 김예지

김학용 • 박성중 • 유경준

윤창현 · 조명희 · 하영제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의 하나로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 대소득을 규정하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기준시가인 9억원은 2009년 12월 31일에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과 일치하며 규정된 이후 금액의 변동이 없었음. 그러나 현행「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그 기준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주택가격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나목).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9억원을"을 "11억원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나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가 <u>9억원</u>	11억원
<u>을</u>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u>을</u>
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	
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	
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	
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	
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